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 공급부족으로 가뭄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농어촌용수 공급현황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농어촌용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행정 지도·조치절차, 빈집의 매입 등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되고, 농어촌민박의 사전 거주요건 신설 등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민박임을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783호, 2020. 2. 11. 공포, 2020.8.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 내용(제11조의2제1항 신설)

- 1) 농어촌용수 수요·공급 현황, 농어촌용수 공급부족 발생 및 대응 현황, 농어촌용수 공급확충계획 등 실태조사 내용을 정함

나. 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 절차(제11조의2제2항 내지 제3항 신설)

- 1)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급수가 마무리되는 매년 10월말까지 가뭄 피해우려지역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 2) 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내용을 확인·검토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가뭄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

다.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등에 출입할 계획임을 알리는

“출입통지서”를 규정(안 제43조의2제1항)

- 1) (개정 주요내용) “출입통지서”(별지 112호)를 신설
- 2)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3 제2항 본문의 위임사항

법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라.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등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출입허가증”을 규정(안 제43조의2제2항)

- 1) (개정 주요내용) “출입허가증”(별지 113호)를 신설
- 2)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3 제3항의 위임사항

법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마. 특정빈집으로 인식되는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를 위해 필요한 “특정빈집 신고서”를 규정(안 제43조의 3)

- 1) (개정 주요내용) “특정빈집 신고서”(별지 114호)를 신설
- 2)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3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공익신고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빈집 신고를 위한 별도의 신고서식을 마련

바. 행정지도의 내용과 통지방법 및 처리기간을 규정(안 제43조의4)

- 1) (개정 주요내용) 빈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 지원제도 등을 적시한 “행정지도서”(별지 115호 신설)를 소유자 등의 주소로 통지
- 2)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4 제1항의 위임사항

법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도하여야 한다.

사. 특정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하기 전 사전통지를 위한 서식을 규정(안 제43조의4)

1) (개정 주요내용) “조치명령서”(별지 116호)와 “철거통지서”(별지 117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의 위임사항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 제2항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아. 법령상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8조제5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2항 등)

1) (개정 주요내용)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변경

2) (개정 사유) 어려운 한자용어를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변경

자. 농어촌민박 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49조제5항 제3호 및 제4호)

1) (개정 주요내용) 기존 농어촌민박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06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 기존 민박 사업자의 신고 확인증 제출 필요 명시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장을 상속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는 요건을 면제하고, '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 중인 민박사업장을 대상으로 승계를 인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

카. 농어촌민박 표시제도 도입(안 제49조의3 및 별표3의3)

- 1) (개정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 로고 및 구체적인 표시 방안
-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출입문과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정

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추가(안 별표4)

- 1) (개정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정지와 사업장폐쇄 기준
-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받은 경우 사업을 정지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파. 농어촌민박 신고사항 추가(안 별지제75호서식)

- 1) (개정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난방시설 현황기입 및 신고인 첨부서류 종류 추가
-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난방시설 현황 파악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이하 “가뭄피해우려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 수요 현황
2. 농어촌용수 공급시설 현황
3. 농어촌용수 공급부족 발생 원인 및 대응 현황
4.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 계획
5. 그 밖에 가뭄피해우려지역에 농어촌용수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가뭄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피해우려지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가뭄피해우려지역 조사보고서를 확인·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가뭄피해우려지역 검토보고서의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의 필요성, 농어촌용수 공급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가뭄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①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3(신고서 제출)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14호서식과 같다.

제43조의4(행정지도의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지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지원제도 등을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의 주소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3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를 거쳐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행정지도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2항의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의5(특정빈집의 조치명령의 통지 등) ① 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117호서식과 같다. 제48조제5항 중 “신고필증을”을 “신고확인증”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필증”을 각각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장을 상속한 자가 새로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자 표시) 법 제86조의2제5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50조제2항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신설한다.

별표를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8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6조 까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보호관찰명을 받은 경우		사업정지 3월	사업장 폐쇄명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2년 초과 징역 또는 500만원 초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3)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사업정지 3월	사업장 폐쇄명령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정지 3월	사업장 폐쇄명령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1년 초과 징역 또는 2천만원 초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9호	사업장 폐쇄명령			

별지 제74호서식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 및 별지 제79호서식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부터 별지 제1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 ></u>	<u>제11조의2(가뭄피해우려지역 실</u> <u>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u> <u>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u> <u>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u> <u>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u> <u>(이하 “가뭄피해우려지역” 이라</u> <u>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u> <u>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포함하여야 한다.</u> <u>1. 농어촌용수 수요 현황</u> <u>2. 농어촌용수 공급시설 현황</u> <u>3. 농어촌용수 공급부족 발생 원</u> <u>인 및 대응 현황</u> <u>4.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 계획</u> <u>5. 그 밖에 가뭄피해우려지역에</u> <u>농어촌용수의 공급을 위해 필</u> <u>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u> <u>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u> <u>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u> <u>가뭄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u> <u>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u> <u>야 한다.</u> <u>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u> <u>피해우려지역을 조사하고 그</u>

현행	개정안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	<u>결과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가뭄피해우려 지역 조사보고서를 확인·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가뭄피해우려 지역 검토보고서의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의 필요성, 농어촌용수 공급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가뭄피해우려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 ----- -----

현행	개정안
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 ----- ----- ----- ----- - <u>시·도지사</u> ----- -----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① 법</u> <u>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통</u> <u>지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u> <u>른다.</u>
<u><신설></u>	<u>② 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u> <u>른 증표는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u> <u>른다.</u>
<u><신설></u>	<u>제43조의3(신고서 제출) 영 제61조</u> <u>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u> <u>114호서식과 같다.</u>
<u><신설></u>	<u>제43조의4(행정지도의 절차 등) ①</u>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u> <u>의4제1항에 따라 행정지도하는</u>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지원제도 등을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의 주소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3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를 거쳐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행정지도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2항의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의5(특정빈집의 조치명령의 통지 등) ① 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117호서식과 같다.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현행	개정안
휴양지사업자 <u>신고필증을</u>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u>신고확인증을</u> ----- ----- ----- ----- -.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다)	
<신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장을 상속한 자가 새로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4. 이전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u>신고필증</u> 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u>신고필증</u>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 ----- ----- ----- <u>신고확인증</u> ----- ----- ----- <u>신고확인증</u> ----- ----- ----- -----.
<신설>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자 표

현행	개정안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u>신고필증</u> 을 내주어야 한다.	시) 법 제86조의2제5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표시 방법은 별 <u>표3의3과 같다.</u>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신고확</u> <u>인증</u> -----.

가뭄피해우려지역 조사보고서

가뭄피해 우려지역	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농어촌용수 수요 현황	☐ 경지면적 m^2 (논 , 밭) ☐ 주 민 수 명 ☐ 가 축 수 마리(소 , 돼지 , 닭 , 오리 , 기타) ☐ 산업시설 개소 m^2 (공장 개소 m^2 , 산업단지 개소 m^2)
농어촌용수 공급 현황	☐ 농업용수 공급가능량 m^3 /일(용수원) ☐ 생활용수 공급가능량 m^3 /일(용수원) ☐ 공업용수 공급가능량 m^3 /일(용수원)
농어촌용수 공급 부족	유형 ☐ 농업용수 ☐ 생활용수 ☐ 공업용수 원인 ☐ 강우 부족 ☐ 용수공급시설 부족 ☐ 강우 및 용수공급시설 부족
농어촌용수 부족 발생 및 대응 내용	발생 원인 : 발생 기간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생 내용 : 급수대책 추진 내용 : 급수대책 소요사업비 : 백만원(국비 지방비 기타)
농어촌용수 공급확충계획	지 구 명 : 사업위치 : 시·군·구 읍·면·동 리 외 필지 사업내용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지방비)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가뭄피해우려지역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내지 별제 제104호서식, 별지 제108호서식 내지 별지 109호서식

가뭄피해우려지역 검토보고서

가뭄피해우려지역	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가뭄피해우려지역 조사보고서 검토의견	농어촌용수 공급부족원인				
	농어촌용수 공급확충계획 적정성				
	농어촌용수 확충 관련 상위 계획 및 타사업 검토				
	기타 참고사항				
	종합의견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가뭄피해우려지역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첨부서류 포함)
------	---------------------------------

농어촌민박사업의 표시(제49조의3 관련)

1. 도안 모형	 농어촌민박 신고번호 가-1234567
2. 도안 크기	가. 사업장 출입구에 부착하는 도안모형 표지의 크기는 가로20cm*세로20cm이상으로 한다. 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광고 시에는 표지의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표지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 다.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표지 아랫부분에 민박 명칭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3. 부착 요령	가. 도안모형은 주택의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의 좌측이나 우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도안모형은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려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로 부착하여야 한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의 2차, 3차, 4차란 각각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의 처분을 말한다).
-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 가운데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	법 제89조 제1항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나.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입식작목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2호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사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승인취소
마. 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	법 제89조 제1항제6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7호	사업장 폐쇄명령			
아.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8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보호관찰명을 받은 경우		사업정지 3월	사업장 폐쇄명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에 따라 2년 초과 징역 또는 500만원 초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3)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사업정지 3월	사업장 폐쇄명령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정지 3월	사업장 폐쇄명령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라 1년 초과 징역 또는 2천만원 초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9호	사업장 폐쇄명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신 고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업 소재지	업 종	신고 연월일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m²]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m ²	[] 구역 내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전체 방 수(면적)	객실 수(면적)	
	m ² 개 (m ²)	개(m ²)	
조식 제공			
[] 제 공 [] 미 제 공			
시 설	건물형태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 단 독 [] 다가구		
	식 수	화장실	
	[] 상수도 [] 지하수 [] 기 타	[] 수세식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m ³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난방시설 총 대	[]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 []전기 []기타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개	
	완강기: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세척시설: [] 설치 [] 미설치	
	환기시설: [] 설치 [] 미설치	급수 시설: [] 수도물 [] 지하수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장을 상속한 자가 새로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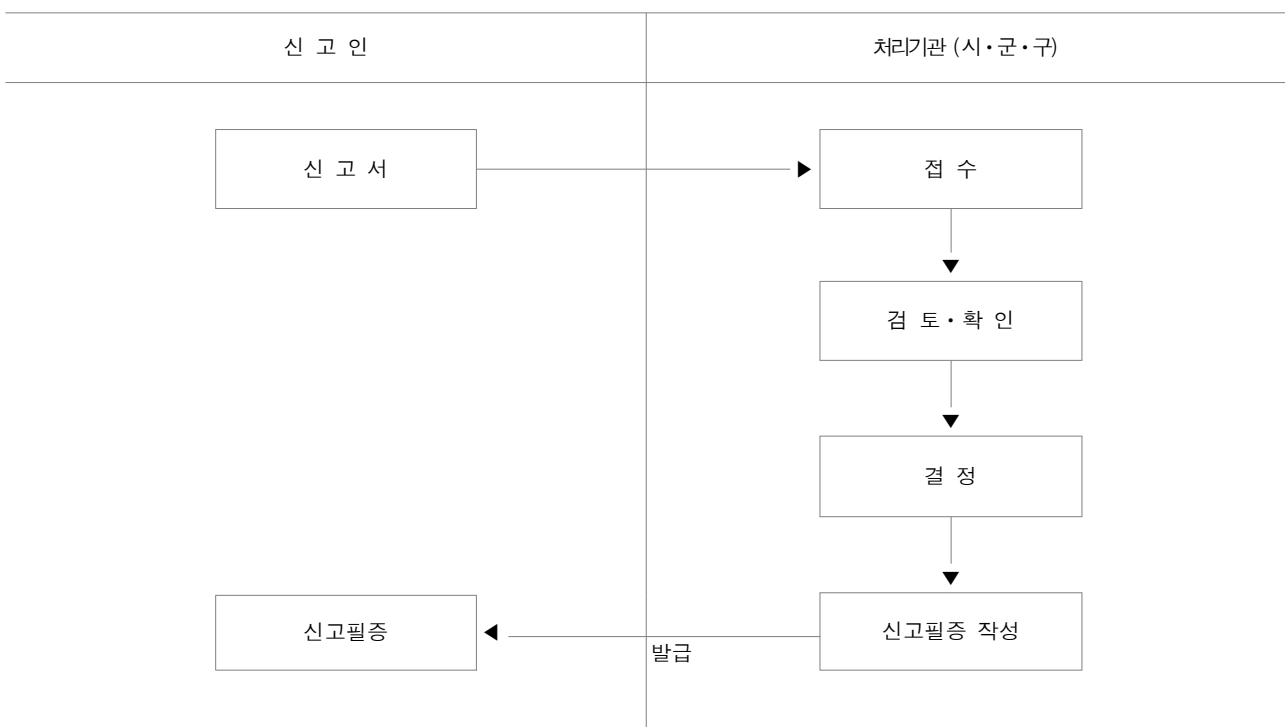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성 명:

생년월일:

민박 명칭:

소재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출입통지서

1. 소속/직급:

2. 성 명:

3. 출입장소:

4. 출입목적:

5. 출입기간: . . . 부터 . . . 까지

사진
(3.5cm×4.5cm)

위 사람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에 출입할 계획임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앞쪽)

제호 출입허가증 사 진 3.5cm ×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을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시 · 군 · 구

60mm × 90mm [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출입허가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에 출입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특정빈집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공익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위치(주소)	건축물의 용도
신고내용	①신고유형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신고대상 건축물	
	③신고대상 건축물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의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빈집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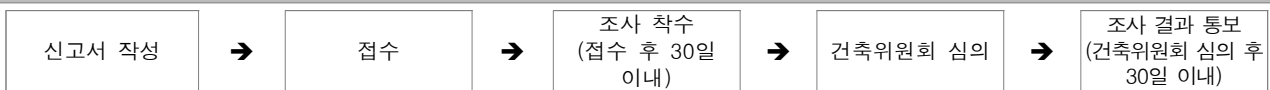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필요시 제출서류	신고 대상 건축물 상태 및 주변에 피해를 끼쳐왔는 현장 사진 등 신고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신고서 앞면의 색상이 어두운 난(접수번호 및 접수일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③신고대상 건축물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의 내용"란에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의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대상 건축물 상태 및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신고대상 건축물이 특정 빈집에 해당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공익신고에 대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단하여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 30 -

처리기관: 시·군·구 (빈집정비 담당부서)

행정지도서

제	호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상 건축물	[] 허가 번호, [] 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지도 내용	철거 등 행정지도의 사유 (빈집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등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철거 등 행정지도의 내용 ▪ 소유자가 조치해야 할 내용 (빈집의 개보수, 철거, 주변환경 정비 등 건축물 소유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 (빈집 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관련 법령, 지원 시책, 회의 등 안내)
	철거 등 행정지도 내용의 이행기간 (이행 기간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그 밖에 필요한 내용 (행정지도 미이행 시의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 상담이 가능한 해당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

귀하가 소유하는 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의 특정빈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행정지도를 실시하오니 지도내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 빈집의 철거 등 조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행정절차법」 제50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31 -
- 향후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서

제	호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상 건축물	[] 허가 번호, [] 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조치명령 내용	철거 등 조치명령의 사유 (빈집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철거 등 조치명령의 내용 (빈집의 개보수, 철거, 주변환경 정비 등 건축물 소유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철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내용 (유의 사항 등)

귀하가 소유하는 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의 특정빈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5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치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 빈집의 철거 등 조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행정 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철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소유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당초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시장·군수등에게 이행기간의 연장(**60일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철거통지서

제	호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상 건축물	[] 허가 번호, [] 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철거 내용	철거 이행기관
	철거 예정일
	철거 사유
	그 밖에 필요한 내용 (철거 보상비 산출 관련 규정,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 안내 등)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소 관 부 서 명 〉

농업기반과(안 제11조의2, 제12조)	
연 락 처	(044) 201-1857, 1863
지역개발과(안 제43조의2~제43조의5)	
연 락 처	(044) 201-1558, 1559
농촌산업과(안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3, 제50조)	
연 락 처	(044) 201-1590, 1591